

광주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85078(본소), 2023나8508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구상금]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85078(본소), 2023나85085(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519443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광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호사 장경진

변론 종결 2024. 9. 12.

판결 선고 2024. 10. 17.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519443(본소), 2023가단529270(반소)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3,796,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1,17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피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되풀이 내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기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제1심은 후행사고에 관한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보고, 피해자의 손해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되 선행사고의 기여도를 60%, 후행사고의 기여도를 40%로 평가하여 피고의 구상범위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총 손해액에 대한 원고차량의 최종적 부담비율은 12%, 피고차량의 최종적 부담비율은 42%이므로,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부담하는 자가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제1심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선행사고와 후행사고의 기여도는 60:40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302,083,800원의 40%인 120,833,530원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기 지급한 89,661,46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172,06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지만, 공동불법행위자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담 부분의 비율을 판단할 때에는,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하여 그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상응한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행사고는 오로지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 피해자는 원고차량의 전면부와 충격하면서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동맥의 파열, 뇌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기흉, 골반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뇌손상을 비롯한 상해의 결과나 손해와 관련하여 그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선행사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심이 인정한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및 기여도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제1심은 후행사고에 따른 피해 내지 손해에 선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에 따른 구상범위를 피해액 중 후행사고 기여도 해당부분 중에서 후행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해당 각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양섭

판사박은주

판사변종두